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제4항관련)

허가기준	적용범위	세 부 기 준
1.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공통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관광휴향시설 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3.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공통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공통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침사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산림의 수원함양	공통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위치하는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 폐수공공처리시설과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 아닌 시설	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는 산지는 평균경사도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임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임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숲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숲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임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7.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 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공통	가.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이 명확하여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 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할 것

우려가 없을 것		다.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마.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장장·납골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자. 사업계획부지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 차.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고 있는 사업계획지의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것이 아닐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시설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할 것 타. 「사방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 부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의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파.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안의 산지가
----------	--	---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림 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적용	가.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당해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나.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산지면적이 당해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다.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당해 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채광 공장	가.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굴진채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잔여산지에서 계속 채광함으로써 잔여산지가 평탄지로 되는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채광은 광산보안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시설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을 시설하는 경우
	도 로	가. 산지전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안림 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시설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선정하기 어렵거나 터널·교량을 설치할 수 없는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切取高)가 당해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유실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할 것

비고

1. "관광휴양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당해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호 적용범위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 세부기준란의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